

수원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나57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나5710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1305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진성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임철승, 김유민

변론종결 2023. 3. 21.

판결선고 2023. 4.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1305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1. 6. 27. 접수 제15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5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1. 6. 27. 접수 제15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재광, 판사 김초하, 판사 전민정